

회원사를 위한 방송통신 법률 상식 ④

IPTV 직사채널 운용금지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yjung@shinkim.com

최근까지 방송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話題)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종편채널의 선정에 관한 문제였을 것이다. 종편 채널이란 종합편성을 행하는 채널사용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 제18호).

역시 법적인 개념을 그대로 옮겨 놓으니 종편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의 지상파 TV와 같이 뉴스 프로그램도 틀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모두 방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종편 사업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반대로 케이블의 채널들의 대다수는 패션, 애니메이션, 영화, 스포츠 등 특정한 분야의 프로그램만을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 이러한 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언론독과점 현상을 감안할 때, 신문 등을 발행하는 거대 언론사가 방송시장에 진출하여 뉴스 등을 방영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여론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IPTV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종편채널 논란과 유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사업법) 제21조와 관련이 있는데, IPTV 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는 직접 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통 IPTV 직사채널 운용금지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PTV 사업법이 직사채널의 운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IPTV는 우리나라에서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들에 의하여 그 도입이 주도 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IPTV 사업자가 직사채널을 운용하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IPTV 도입 시에는 방송 프로그램이 인터넷 망을 통하여 텔레비전으로 송출되는 IPTV의 특성 상 IPTV가 통신이냐 아니면 방송이냐에 따른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방송사에 비하여 월등한 자본력을 가진 통신사들이 방송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방송시장이 대기업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직사채널 운용금지 조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즉 통신사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지 않고, 즉 다른 콘텐츠 업체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할 뿐 자신이 IPTV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틀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면 통신 대기업에 의한 방송시장의 교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사채널 운용금지는 통신사업자는 단순히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인터넷 망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던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IPTV 사업법 제정 당시에는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의 경쟁상대인 케이블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접사용채널과 관련하여 케이블 직사채널의 정의나 운용범위에 관한 제한이 명시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는 케이블TV의 직사채널은 종합편성이나 보도 등의 편성을 행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IPTV 사업법 제정 당시에는 지역의 케이블 사업자들이 직사채널을 통하여 뉴스보도 등을 해왔는데, 당시 이러한 관행은 지역사회에서 공격적인 보도활동으로 지역방송사들이 위협을 받는 것을 비롯해 여론 독과점 및 영향력을 행사해 온다는 지적을 받아 있었다. 이에 따라 IPTV에도 직사채널을 허용하게 되면 거대 통신사들이 사실상 뉴스보도를 행함으로써 언론시장에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IPTV 직사채널 운용금지 조항이 입법된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여론 형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기업이 언론사 및 방송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방송법 역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기업들이 뉴스보도 등을 통하여 여론 형성자의 지위를 가지는데에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뉴스보도를 제외한 콘텐츠 진흥의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IPTV 사업자가 직사채널을 운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IPTV 직사채널 운용금지조항 때문에 IPTV 사업자들은 IPTV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이드와 같은 것들도 직접 제작하여 송출할 수 없고, 별도의 PP (Program Provider) 등록을 마친 별개의 법인체를 통하여 이를 IPTV에 송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소개의 성격을 가진 채널까지 IPTV 사업자로 하여금 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 위와 같은 직사채널 운용금지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통신기업들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자회사가 PP 등록을 하고 IPTV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 가이드 등을 내보내고 있는데, PP인 자회사를 통해 모회사인 통신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IPTV에 송출할 수 있다면 IPTV에서의 직사채널 운용금지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IPTV 직사채널 운용금지 조항과 관련된 논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대 통신기업에 의한 방송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방안이 직사채널 운용의 금지 이외에는 달리 없다고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IPTV 사업자가 거대 자본을 통하여 방송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문제는 뉴스 보도 등을 직사채널에서 송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IPTV 사업자가 직사채널을 운용하게 되면 콘텐츠 진흥의 차원에서 분명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 만큼 대기업의 언론 장악 등을 이유로 IPTV 사업자의 직사채널의 운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IPTV 사업법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010년 12월 13일,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디지털미디어업체들에게 저작권, 계약, 보안 등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